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지원사책 내용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내용 업데이트는 향후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www.ahpek.or.kr ■ 중견기업 정보마당 : www.hpe.or.kr

제1장 중소기업청

1-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3
1-2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6
1-3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8
1-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0
1-5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2
1-6 기술혁신형 IP 통합 솔루션 지원사업	14
1-7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17
1-8 FTA 컨설팅	20
1-9 중견기업 확인제도	22

제2장 기획재정부

2-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27
2-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9
2-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30
2-4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1
2-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2
2-6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3
2-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5
2-8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6
2-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7
2-10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38
2-11 가업승계 시 과세기액 공제 확대	40
2-1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2
2-13 법인세 최저한세를 완화	43
2-1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44

제3장 고용노동부

3-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47
3-2 고용창출 지원사업	50
3-3 고용촉진 지원사업	52
3-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55
3-5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57

제4장 한국수출입은행

4-1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61
4-2 수출 중견·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64
4-3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66
4-4 수출성장자금대출	68
4-5 수출촉진자금대출	69
4-6 해외투자자금대출	71
4-7 해외사업자금대출	72
4-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73
4-9 수입자금대출	74
4-10 수출환어음매입	75

제5장 한국산업은행

5-1 지역설비 투자펀드	79
5-2 2차 설비 투자펀드	80
5-3 안전설비 투자펀드	81
5-4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82
5-5 동반성장대출	83
5-6 테크노뱅킹	84
5-7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86
5-8 리더스론	87
5-9 KDB Global Star	88

제6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월드챔프	91
6-2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93
6-3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	94
6-4 해외전시회	95
6-5 해외 IT 지원센터	97
6-6 글로벌 M&A 지원	98
6-7 지식재산권 보호	99
6-8 공동물류 지원	101

제7장 신용보증기금

7-1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105
7-2 시설자금보증	107
7-3 B2B 플라자	108
7-4 M&A 보증	110
7-5 유동화회사보증	112
7-6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115

제8장 기업은행

8-1 기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119
8-2 IBK창조기업대출	121
8-3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123
8-4 IBK시설투자대출	124
8-5 우량산업단지분양특별대출	126
8-6 우량산업단지설비투자자금대출	128

제9장 기타기관

9-1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특허청)	133
9-2 인력파견사업 (한국전기연구원)	134
9-3 현장에너지기술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135
9-4 이전기술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136
9-5 사업화연계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137
9-6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① (에너지관리공단)	138
9-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② (에너지관리공단)	139
9-8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141
9-9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142
9-10 Techno-Doctor (한국기계연구원)	143
9-11 기업기술지원 (한국기계연구원)	144
9-12 기술인재지원사업 (한국기계연구원)	145
9-13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6
9-14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7
9-15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48
9-16 전문연구요원 관련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50
9-17 신시장 개척지원 (해외건설협회)	152
9-18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해외건설협회)	153
9-19 식품업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수단 발굴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4
9-20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5
9-2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6
9-2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8
9-2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한국발명진흥회)	160
9-24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 지원 제도 (외환은행)	161
9-25 기술인재지원사업 (한국화학연구원)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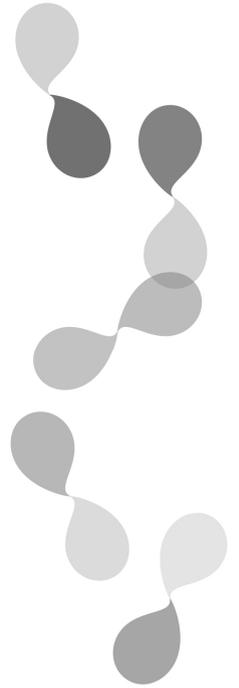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제1장

중소기업청

대상_ 중견·중소기업

1-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3
1-2.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6
1-3.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8
1-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0
1-5.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2
1-6. 기술혁신형 IP 통합 솔루션 지원사업	14
1-7.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17
1-8. FTA 컨설팅	20
1-9. 중견기업 확인제도	22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개요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중 기업규모 및 업종과 기업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 기업규모 및 업종
 - 201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 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¹⁾은 1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인 전 업종 중견²⁾·중소기업³⁾
 - 1) 표준산업분류상의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기업특성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수출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2012~2014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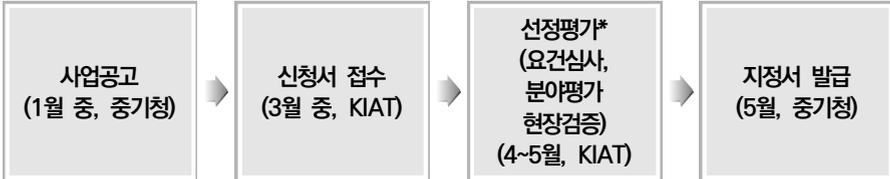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17년까지 300개 선정 예정(2014년 154개사 선정 지원 중)
- 선정된 중견·중소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구분	내용	지원기관
기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 (연간 15억 원 이내)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증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연 1.4억 원 이내(기업 50% 부담) World Class 300 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KOTRA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정부해외인턴십 연계지원 온라인 상시 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 확보 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무역협회 잡코리아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별 우수 중견·중소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 편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형히든챔피언 - 정책금융공사 : Frontier Champ - 한국무역보험공사 : Trade Champ - 기업은행 : 수출·기술 강소기업 - 산업은행 : KDB Global Star - 하나은행 : WC300 기업 지원 - 농협은행 : WC300 기업 종합지원 - 서울보증보험 : WC300 기업 보증지원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글로벌 금융지원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서울보증보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은행 : 경영 컨설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생산현장 종합 지원사업 - 지식재산전략원 : 지적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IP-R&D 전략지원 - 지식재산보호협회 :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중소기업은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

지원절차

-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상기 제출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평가항목
 -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391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 「사업공고」 참조

2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원개요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5억 원
- 진단과제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 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 중견·중소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견·중소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전담과제
접수기간	1월, 3월, 5월	3월, 5월, 7월	4월
지원기간	최대 1개월	최대 4개월	최대 1년
지원금액	1백만 원	최대 20백만 원	최대 30백만 원
출연금 비중	국비 100%	국비 75% (민간부담금 25%)	국비 75% (민간부담금 25%)

지원절차

● 신청기간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전담과제
1차	2015.1.14 ~ 1.23	2015.3.11 ~ 3.20	2015.4.8 ~ 4.24
2차	2015.3.11 ~ 3.20	2015.5.13 ~ 5.22	
3차	2015.5.13 ~ 5.22	2015.7.15 ~ 7.24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hak.net>) 상 온라인 신청 접수

● 선정절차

- 진단과제



-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기술인정보시스템 : <http://techin.sanhak.net>

3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개요

- 지역의 우수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마케팅, 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WC 후보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한 지역강소기업
 - 매출액 : 직전연도 기준, 100억 원(SW 부문은 25억 원)~1,000억 원 미만
 - 수출액 : 직전연도 기준, 평균 매출액 대비 8% 이상
 - R&D 비중 : 3년 평균 매출액 1% 이상
 - 지원 제외 : 글로벌 강소기업, ATC 기업, WC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 제외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중견·중소기업 80개사 내외(R&D 지원예산 100억 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지역
 - 2014년 지원현황 : 글로벌시장진출 성장전략수립 및 R&D 과제 기획지원 24개 18억 원
- 컨설팅 :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수립 지원* 및 중장기 R&D 과제 기획 지원으로 구성
 - * 월드챔프(KOTRA)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해외마케팅 : 해외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 R&D 지원 :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R&D 과제기획에 대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지역자율설계 프로그램 : 지역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사업 발굴 및 지역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14개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 공고 및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신청양식은 각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공고상에 게재
 - 신청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계획, 중장기 R&D 과제계획 등으로 구성
- 선정절차



- * 지역협의체 : 비수도권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1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 협력사(제품 공급망) 간 전 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협력사(2개 이상)
 - 주관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 400억 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 원 이상)인 전 업종 중견·중소기업
 - 참여기업 : 주관기업(중견기업 또는 후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관계기업
 - 이노비즈기업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우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6개 컨소시엄(전체 예산 27.3억 원)
 - 1단계(사전기획) 지원 : 10개, 6.5억 원
 - 2단계(R&D 연계) 지원 : 6개, 18억 원
 - 2014년 지원현황 : 1단계(사전기획) 18개 컨소시엄

● 세부사업 내역

구분	내용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비율)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아이템 발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	7개월	65백만 원(75%)
2단계 (R&D 연계)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공급망·연구기관 매개의 중소-중견 창의·융 합형 R&D	2년	6억 원(75%)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 2/3 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60%

지원절차

-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 사업공고 및 지침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41-589-8315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5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에게 해외 시장개척 및 무역기술장벽(해외규제, 표준, 현지 수요변화 등) 극복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인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지원대상

- 직전연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3,000억 원인 중견·중소기업
- 3대 업종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 대상
 - 전기·전자 : 가전기기, 조명, 전지, 전기·통신, 의료기기 등
 - 기계·금속 : 기계, 철강, 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건설자재 등
 - 화학·생활 : 화장품, 식품, 섬유, 플라스틱, 환경자원, 자동차 화학 등
- 사업수행기관 필요시 정부 출연연구기관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전체 예산 16.8억 원)
 - 과제당 정부지원 예산 : 1억 원 내외
 - '14년 지원현황 : 8개 기업, 총 2억 원 지원(정부지원 1억 원 + 민간부담금 1억 원)
- 해외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적합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대상국의 규격인증 및 표준, 환경규제, 현지수요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해외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필요 시)
 -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절차, 소비자 기호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가 기술개발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 * 사업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컨설팅비 계상 가능

지원절차

-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5년 지원시책」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반팀 : 02-6009-352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go.kr) 「사업 공고」 참조

6 기술혁신형 IP 통합 솔루션 지원사업

지원개요

- 기업 규모 및 글로벌 역량에 따른 원천·핵심특허 창출 중심의 R&D 체계 개선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

지원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시스템 SW 개발 공급업 등은 5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 이상인 중견·중소기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 시, 우대가점 부여
- * WC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전체 예산 23억 원)
- 기업 R&D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IP 통합 솔루션 지원
 - 특허경영전략 지원은 특허 전략 및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
 - 특허전략은 주력기술 IP 획득·보강, IP 기반 신사업 발굴 중심으로 지원
 - 특허인프라 구축은 IP 건강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IP 관리 시스템, 인력 양성, 특허 자산 평가 등의 기업 맞춤형 IP 역량 제고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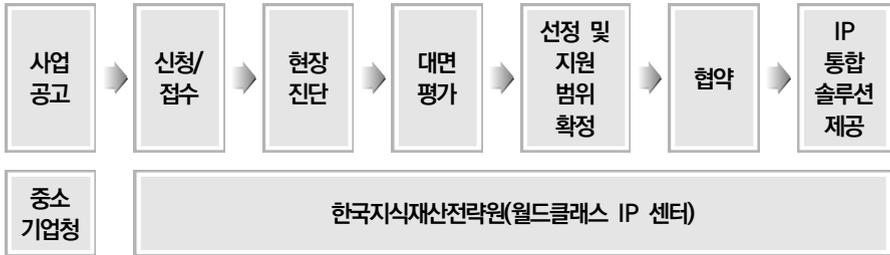
● 세부내용 내역

구분	항목	내용
(트랙 I) 특허경영 전략 지원	특허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기술 IP 획득·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관점에서 R&D 전략 정교화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선제적 특허분쟁 예방 시장·기술 분석 내용을 반영한 IP 전략 수립 IP 기반 신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기반 맞춤형 미래 신수종 R&D 전략 수립 원천·핵심 특허 설계
	특허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건강진단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IP 관리 시스템 구축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트랙 II) 특허인프라 구축	특허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건강진단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IP 관리 시스템 구축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IP 성장전략서(사업신청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 고지
- 심사·평가내용
 - 글로벌 기술 경쟁력 :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 R&D 인프라 수준(인력, 시설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확보 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 투자여지 등
 - 지식재산 역량 : 지식재산 역량 수준(특허권, 인력 등), 지식재산 자원 및 역량 확보의 적극성
 - 과제추진 역량 : 과제 수행 의지, 기술개발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IP 기반의 R&D 성장 잠재력

●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4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 : 02-3287-433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시책」 참조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 「사업 공고」 참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7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지원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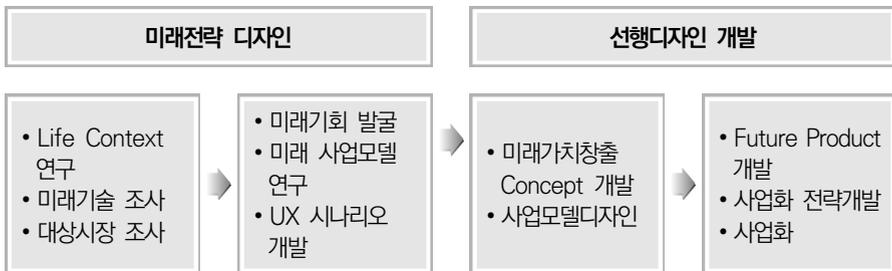
- 미래시장창출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앞선 신 시장 창출 미래상품 디자인 및 사업화 연구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중견·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 시, 우대가점 부여
- * WC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전체 예산 14억 원)
- 지원 산업분야에서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 디자인개발 지원



● 세부내용 내역

구분	내용	정부지원 한도/기간	비고
미래전략 디자인	사업영역(기술, 지역, 시장 등)에 해당하는 2~3년 앞단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중견·중소기업의 미래사업 설계	14,000만 원 /5개월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선행 디자인 개발	신 시장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 선도전략을 개발, 시장 및 고객에 대한 UX*(User experience) 설계	13,000만 원 /4개월	

* UX : User experience의 약어로 사용자가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을 의미

지원절차

- 신청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서) 및 오프라인 접수(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 고지
- 심사·평가내용 : 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출경쟁력, 사업화 역량, 경영능력 및 해당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기술성, 디자인 융합 가능성 등
-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4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비즈니스지원센터 : 042-864-263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시책」 참조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 「사업 공고」 참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8 FTA 컨설팅

지원개요

- FTA 활용자원을 위해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FTA·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CEO와 재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FTA 체결지역에 현지 마케팅을 지원

지원대상

- FTA 컨설팅 :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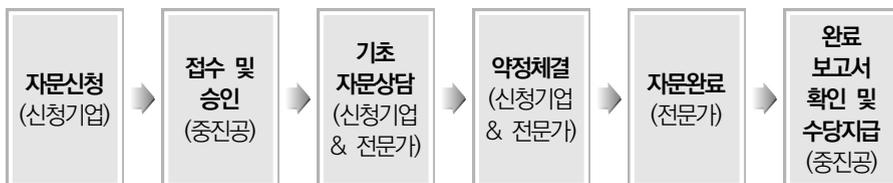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00개사(2014년 기준)
- 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 증명 등 원산지 애로해소와 수출업무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한 무역 단계별 컨설팅을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
 - FTA 컨설팅 : 원산지 확인 및 증명, 인증 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 소요비용 중 업체분담금은 매출액별 차등 부과
 - 10억 원 이하 : 무료
 - 10~50억 원 이하 : 10%
 - 50~500억 원 이하 : 20%
 - 500억 원 초과 : 30%

지원절차

- 신청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44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9 중견기업 확인제도

지원개요

-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지원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 이후 첫날부터 1년
* 적용 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특허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에너지관리공단) 등

지원절차

- 신청 :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직전 3개년 감사보고서, ③ 주주명부, ④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기업의 ①~③

● 처리절차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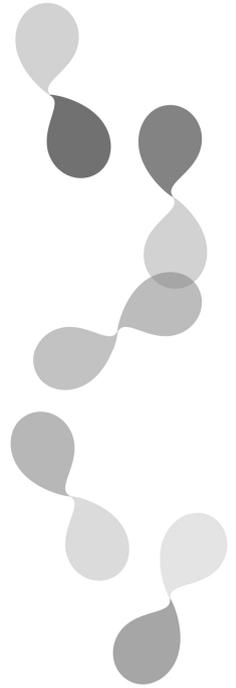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략팀 : 02-3275-2226
- 중견기업정보마당 사이트 : www.hpe.or.kr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제2장 기획재정부

대상_ 중견기업 우대

2-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27
2-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9
2-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30
2-4.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1
2-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2
2-6.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3
2-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5
2-8.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6
2-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7
2-10.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38
2-11. 기업승계 시 과세가액 공제 확대	40
2-1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2
2-13. 법인세 최저한세율 완화	43
2-1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44



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시 우대하여 중견기업의 연구 관련 투자를 촉진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②에 해당하는 금액
 -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구분		세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25%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이후 1~3년	15%
	유예기간 이후 4~5년	10%
중견기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 억 원 미만)		8%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제2조제5항)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 우대하여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 관련 시설 투자 유도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지원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시 우대하여 중견기업의 기술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지원내용

-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특허권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 **기술비법**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에 해당
-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해 취득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4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1,500억 원 미만)

지원내용

- 신규상장하는 중견기업의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1호)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특허권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중견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지원내용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 첨단기술설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6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중견기업이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지원내용

-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제1항·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의 방호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 시설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
-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중견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지원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과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의 시설
-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8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촉진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지원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3제1항·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
 - 청정생산시설로서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
-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

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기술력이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지원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4제1항·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10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지원개요

- 기술력이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3조제3항)
 - * 사업용자산 :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전단)
 - 기본공제금액 :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추가공제금액 :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단, 그 금액이 ①+②+③)에서 ④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①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서 정하는 학교의 졸업생 수 × 2천만 원
- ②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①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 500만 원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①에 따른 졸업생 수 -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 원
- ④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11 기업승계 시 과세가액 공제 확대

지원개요

- 과세가액 공제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의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명문 장수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

지원대상

-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지원내용

- 요건을 충족하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한도로 하고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500억 원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① 50% 이상의 기간
 - ②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만 해당)
 -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 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함)은 제외함을 상속받은 경우
- ④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1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개요

-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큰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근로자 소득증대를 촉진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지원내용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13 법인세 최저한세율 완화

지원개요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안착할 수 있도록 진입 기간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차등 적용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경우 그 기간 및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 * 최저한세액 :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 중 일정비율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
- 중견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구분		세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7%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이후 1~3년	8%
	유예기간 이후 4~5년	9%
과세표준이 100억 원 이하	유예기간 이후 6년~	10%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12%
그 외의 경우		17%

1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지원개요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제재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대기업과 차등 기준을 중견기업에 적용하여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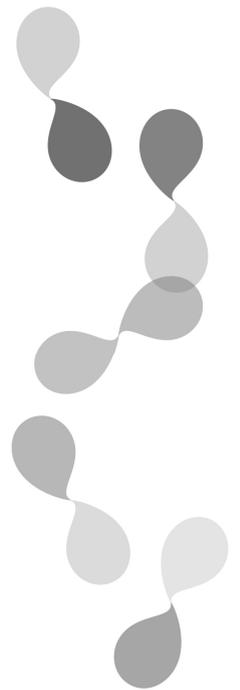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로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대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 30%, 한계 보유비율 3% 적용)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한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제3장

고용노동부



대상_ 중견·중소기업

3-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47

대상_ 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3-2. 고용창출 지원사업 50

3-3. 고용촉진 지원사업 52

대상_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

3-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55

대상_ 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3-5.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57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개요

-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개선을 지원한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

지원내용

-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기업(기업규모 관계 없음)
지원요건	• 실업자를 무기직, 차별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 -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 평균 1주 동안의 근로시간)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50% - 월 60만 원 한도(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한도)
지원절차	• 일자리 창출계획 승인신청(기업→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 인건비 지원신청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6개월 이상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구분	주요 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전환수당 등)의 50%(월 50만 원 한도) • 간접노무비: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월 20만 원(중견·중소기업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월 60만 원 한도, 대기업은 월 30만 원 한도)
지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 →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근로조건개선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계약직 전환,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월 60만 원 한도) 1년간 지원
지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 →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컨설팅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기업 (기업의 규모나 공공·민간 부문에 관계 없음)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 및 컨설팅 범위 등을 감안해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규모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 이상 자부담
지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실시계획 심사 신청(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근로조건 개선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컨설팅 지원 : 노사발전재단(02-6021-1204~1213)

2 고용창출 지원사업

개요

- 교대제 도입·확대 등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개선, 유망창업 기업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 일부,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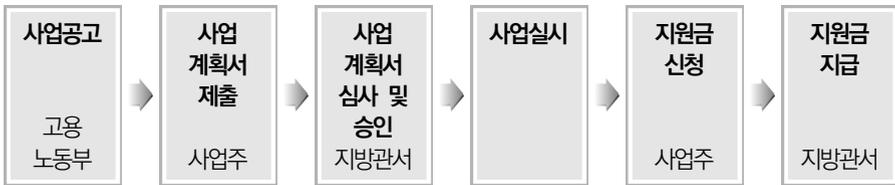
-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 지원대상 : 교대제·실근로시간단축제·일자리순환제 도입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로 근로자 수 증가
 - 지원내용
 - 1) 인건비 지원(모든 기업)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 720~1,080만 원
* 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 시 최대 2년간 2,160만 원
 - 2) 설비투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2억 원
 - 3) 설비투자용자(모든 기업) : 최대 50억 원
 - 4)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6개월 한도)
- 고용 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숙사,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경우
 - 지원내용
 - 1) 시설비 지원 : 최대 5천만 원(증가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 2) 시설비용자 : 최대 2억 5천만 원
 - 3) 인건비 지원 : 증가 근로자 1인당 120만 원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지원대상 :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1인당 연 720~1,080만 원
- 전문인력채용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080만 원(기업당 3명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기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www.moel.go.kr

3 고용촉진 지원사업

개요

- 취업희망 풀 등록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860만 원(월 통상임금이 11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720만 원) 지원

지원시기

-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75% 한도)

구 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월 통상임금 110만 원 이상 및 중증장애인	170만 원	170만 원	260만 원	260만 원
월 통상임금 110만 원 미만	144만 원	144만 원	216만 원	216만 원

지원한도

-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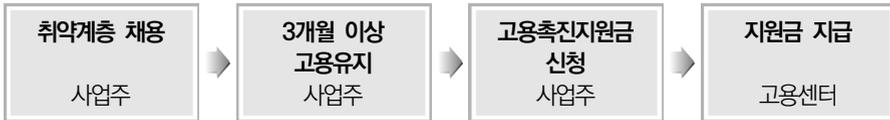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마치고 2, 3단계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자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마치고 3단계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이수자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전직기본교육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www.moel.go.kr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개요

-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지원내용

- 정년연장 지원금
 - 지원대상 :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
 - 지원요건 : 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단, 정년 폐지·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단축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 1~3년 미만 연장 시 1년간, 3년 이상 연장 시 2년간 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
 - 2) 정년 폐지 또는 연장한 후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상 지원
- 정년 퇴직자 재고용
 - 지원대상 : 정년 퇴직자 재고용 사업주
 - 지원요건 : 정년 5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 다만, 고용 기간 1년 미만 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근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 시 6개월, 3년 이상 연장 시 1년간 재고용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후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www.moel.go.kr

5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을 용자 및 무상 지원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 도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근거 :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지원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지원요건

-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증을 교부 받은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영유아교육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
-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유급 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 직장어린이집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 20인 이상에 한함)

지원내용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수준
설 치 비	무상 지원	시설설치비	3억 원 (공동 6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금액의 60~8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시설 80%
		유구비품비	5천만 원 (교체비 : 3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체시기 : 3년
	용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개·보수 시설 전환	7억 원 (공동 9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운 영 비	인건비 지원 (95)	보육교사 등	120~52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일부 추가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인 이하 : 120만 원 - 20 ~ 39인 : 200만 원 - 40 ~ 59인 : 280만 원 - 60 ~ 79인 : 360만 원 - 80 ~ 99인 : 440만 원 - 100인 이상 : 520만 원 •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지원단가의 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기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문의처

- 설치비 : 근로복지공단(02-2670-0526)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585~7, 부산 : 051-328-5272~5)
- 운영비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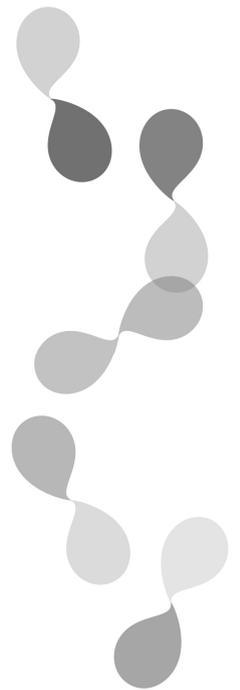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대상_ 중견·중소기업

4-1.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61
4-2. 수출 중견·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64
4-3.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66

대상_ 중견기업 우대

4-4. 수출성장자금대출	68
4-5. 수출촉진자금대출	69
4-6. 해외투자자금대출	71
4-7. 해외사업자금대출	72
4-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73
4-9. 수입자금대출	74
4-10. 수출환어음매입	75



01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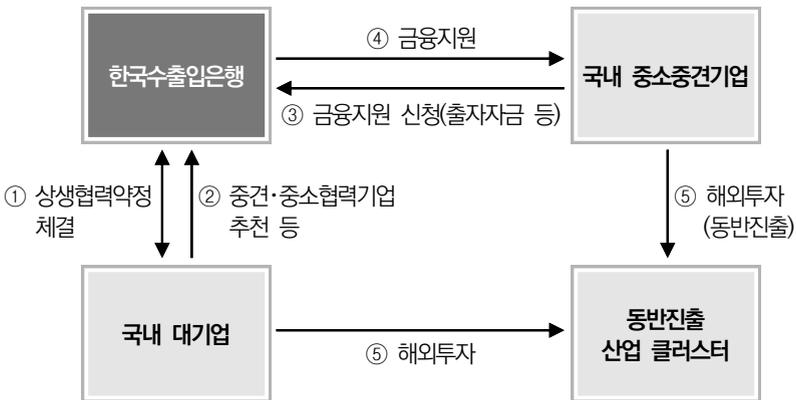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아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협력 중견·중소기업에게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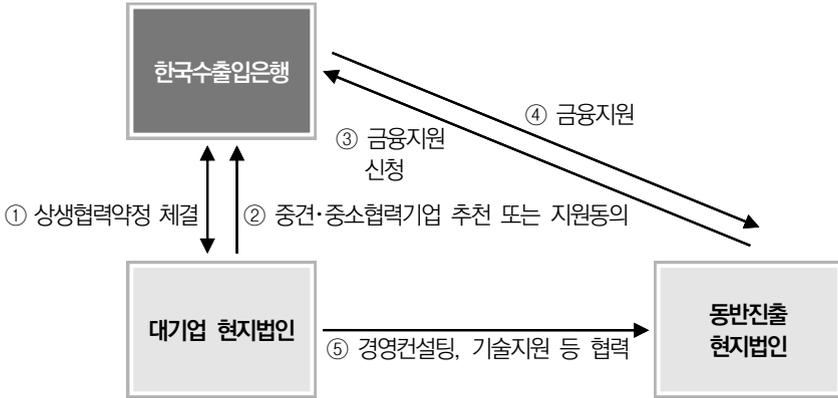
- 해외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동반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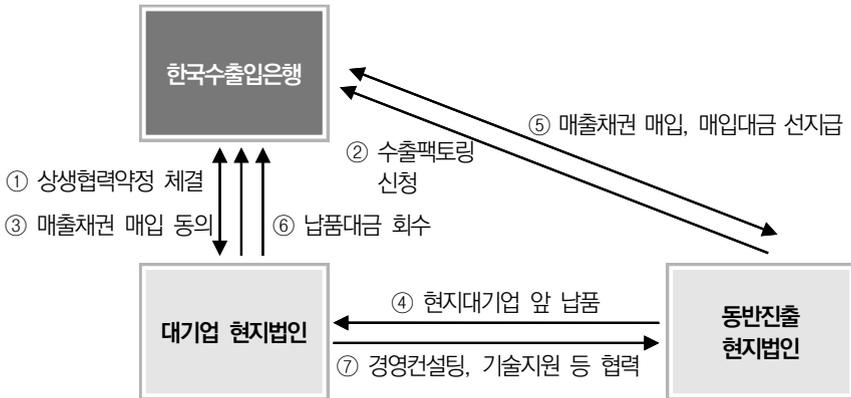
- 직접지원
 - 해외투자자금대출(출자자금 등) : 해외투자자금대출이란 해외투자(대부투자 포함)를 하는 국내기업에 출자자금 등을 제공하는 대출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이란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가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시설이나 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법인에 직접 지원하는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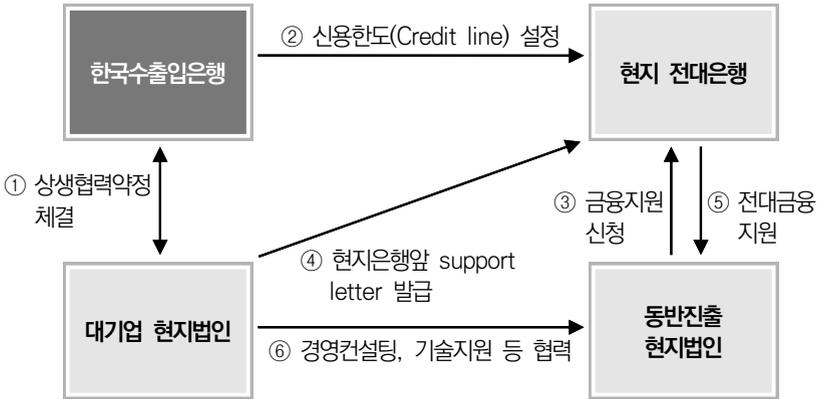


- 수출팩토링 : 중견·중소기업은 만기 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납품이행 즉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납품대금은 만기일에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회수
- * 무소구조건 : 대기업이 만기일에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중견·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기 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제거



● 간접지원

- 전대금융 : 수출입은행이 외국 소재 은행에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동 은행은 설정된 신용한도를 현지 아국법인의 설비, 투자,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데 사용



● 지원혜택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
- 수출팩토링 이용 시 현지 대기업 앞 매출채권을 즉각 현금화하여 신속한 운전자금 조달 가능
-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컨설팅 제공
-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으로부터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등 상생협약에 규정된 사항 지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 02-6255-5332

2 수출 중견·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지원개요

- 당행과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대기업의 현지법인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여 수출 물품의 제작자금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상생 대기업이 당행 여신지원을 추천하는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대상여신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및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지원대상거래	- 상생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 대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 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상생 대기업과 공동수주하는 경우 포함) - 상생 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이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지원대상거래 (상생 대기업)	- 중견·중소협력기업(대기업의 관계사 및 방위산업체 제외, 이하 같다)의 상생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상생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혹은 합작법인 형태로 수주한 해외사업
기타 대출조건	각 여신상품별 대출조건에 따름
우대사항	정책조정률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지원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 02-6255-5332

3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지원개요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일괄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수출액 20억 원 이상인 수출 중견·중소기업
* SW 개발·공급 기업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 기업심사 및 육성대상기업 선정
 - 선정기준 : 한국형 히든챔피언 적합도 재무안정성 : (80%) + (20%)
 - 평가항목 : 기술력(35%), 성장잠재력(35%), CEO 역량(10%), 재무건전성(20%)

지원내용

-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기업이 제출한 중장기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 기업의 니즈(Needs)와 역량에 맞추어 수립하는 금융·비금융서비스 지원계획
- 맞춤형서비스 제공 :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처방
 - 금융서비스 : “수출품 개발 → 생산 → 해외판매” 등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반에 맞춤형 금융 제공
 - 비금융서비스 : KOTRA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 성과관리 : 매년 육성대상기업의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성과부진 시 마스터플랜 수정 또는 육성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히든챔피언팀 : 02-3779-5298

4 수출성장자금대출

지원개요

-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 용도를 특정 수출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은 90%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 350억 원(중소기업 250억 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 규모 등에 따라 600억 원(중소기업 400억 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02-3779-6303

5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개요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창조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 친환경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친환경산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30억 원 - 그 외 기업 : 50억 원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 가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02-3779-6303

6 해외투자자금대출

지원개요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견·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02-3779-6303

7 해외사업자금대출

지원개요

- 국내기업에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견·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범위 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02-3779-6303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지원개요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 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직접투자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설립 5년 이상 대기업 매출액의 30%, 5년 미만 설립 초기 및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02-3779-6303

9 수입자금대출

지원개요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 물가안정, 내수활성화,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에너지 관련 물품은 포함)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과거 2개월 수입결제금액 포함) 또는 수입선금금액의 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 시 : 6개월, 1년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거치기간 3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 시 : 만기 일시상환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 02-3779-6303

10 수출환어음매입

지원개요

-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D/P, O/A 방식 등)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 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선적 후 수출금융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의한 수출 거래
대출통화	미 달러, 엔, 유로화 등
대출금액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상(단, 분할 선적 거래 또는 다수의 거래가 동일자로 취급 되는 경우에는 미화 5만 달러 미만도 취급)
대출기간	30일 이상 2년 미만(단, 중견·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O/A 방식에 따른 수출채권 매입의 경우에는 30일 이하도 가능)
운용방식	회전한도 방식(건별 취급도 가능)
대출금리	Libor+가산율(거래형태, 신용등급, 담보별 차등적용)
채권보전	우량기업 : 신용대출 기타 :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처리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 02-3779-6468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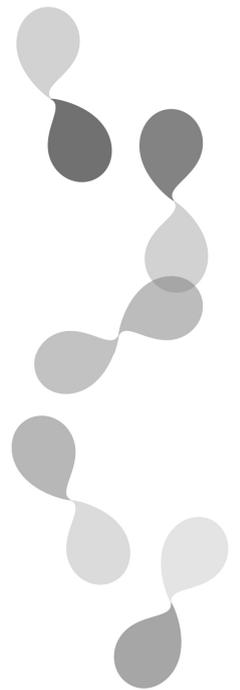
한국산업은행

대상_ 중견·중소기업

5-1. 지역설비 투자펀드	79
5-2. 2차 설비 투자펀드	80
5-3. 안전설비 투자펀드	81
5-4. 파이어나어 프로그램	82
5-5. 동반성장대출	83
5-6. 테크노뱅킹	84
5-7.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86
5-8. 리더스론	87

대상_ WC300

5-9. KDB Global Star	88
----------------------------	----



01 지역설비 투자펀드

개요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 소재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 및 투자 형태로 설비투자자금에 대해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1%p)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본 건 계획사업장이 지방(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기업 및 '지역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관련 기업
 - * '14.3.12자 정부 발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관련 기업(수도권 소재기업 포함)
 - 기존 1차 중견·중소 설비투자펀드(2012~2014년) 기 지원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200억 원(건별 150억 원)
-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8년 이내), 주식투자(우선주 포함) 및 사모사채(시설용, 주식 관련채 포함 5년 이내)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2차 설비 투자펀드

개요

-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사모사채 형태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1%p)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단, 기존 '1차 중견·중소 설비투자펀드(2012~2014년)' 및 '지역설비 투자펀드' 기 지원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200억 원(건별 150억 원)
-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8년 이내) 및 사모사채(시설용, 주식관련채 포함 5년 이내)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3 안전설비 투자펀드

개요

- 안전 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사모사채 형태로 금융 지원 및 금리우대(1%p)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명시된 세액공제 대상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해외자원개발 설비 제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상 명시된 안전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고용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안전 관련 설비투자(고용부)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환경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등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 관련 설비투자(산업부)
 - 안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 기타 안전시설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보강되는 설비에 대한 투자
 - 통계청 방재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에 따라 포함된 업종 등
 - 그 외 국민위생 관련업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업종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200억 원(건별 150억 원)
- 지원비율
 - 설비투자 중 안전 관련 설비가 30% 이상인 경우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설비투자 중 안전 관련 설비가 30% 미만인 경우 : 안전 관련 설비 해당 금액 30% 이내
-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8년 이내) 및 사모사채(시설용, 주식관련채 포함 5년 이내)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4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개요

- 미래선도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보유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벤처 및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및 사모사채 형태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0.3~0.6%p)

지원대상

구분	창업 초기단계	성장·성숙단계
산업	정부 고시 17개 부문의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창업 7년 이내 벤처 및 중소기업	창업 7년 초과 벤처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품	Start-up 투자 기술력평가대출* 창업초기기업 우대대출 KDB-VC 연계 투융자	성장·성숙기업 투융자 KDB-VC 연계 투융자

* 산업은행 자체 기술평가 양호등급 이상 또는 Start-up 투자 후 1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지원방법 및 한도

상품명	업체별한도(억 원)			비 고	
	시설	운영	투자		
Start-up 투자	-	-	15		
창업초기 단계	기술력평가대출	20	10	-	
	창업초기기업 우대대출	50	30	-	
	KDB-VC 연계 투융자	30	10	15	벤처캐피탈과 동반 투자
성장·성숙 단계	성장·성숙기업 투융자	업체별 한도 제한없음			건별 승인
	KDB-VC 연계 투융자				벤처캐피탈과 동반 투자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5 동반성장대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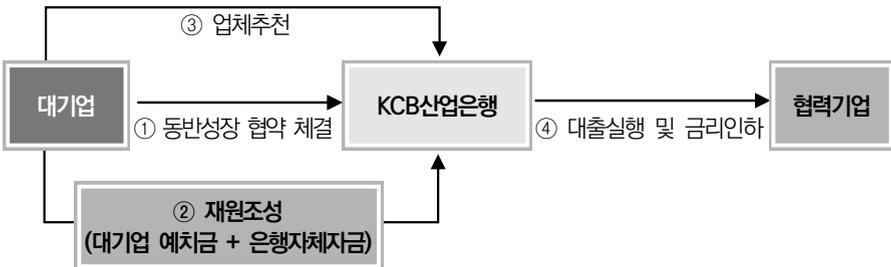
- 대기업 우량 협력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대기업 예치재원을 기반으로 금리우대(2.0p)

지원대상

-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포함

지원내용

-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



- 한도성 운영자금과 연장조건부 단기시설자금은 제외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06 테크노뱅킹

개요

-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필요자금 지원

지원대상

- 각 지원별로 대상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IP 구입자금, IP 사업화자금 및 IP를 담보로 하는 자금 등 IP를 매개로 하는 자금수요 전반
- 취급조건 : 기술사업화평가 결과 “TBa” 이상인 경우
- 금리우대 : 원화 시설 $\Delta 0.6\%p$, 외화 시설 및 원·외화 운영 $\Delta 0.3\%p$

구 분	내 용
IP 구입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기업의 IP 구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구입은 등록된 IP의 양도, 실시권 허락(License)에 한함 • 지원대상 : 개인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지원한도 : IP 구입금액의 80% 이내 • 지원자금 : 원·외화 시설자금
기술 IP 사업화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IP 사업화기업(개인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별 지원한도 없음 • 지원자금 : 투자, 대출(시설 및 운영) 및 신용공여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IP를 담보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는 제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한함
IP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업체별 20억 원 이내, 단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 지원자금 : 원·외화 시설 및 운영자금 • 유의사항 :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하여 정부 공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가치 평가를 득한 경우 해당 IP 담보 취득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김광민 대리 : 02-787-4090

7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개요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경영전략, 재무전략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KDB Start-Up	KDB Jump-Up	KDB Global Highway
대상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제한 없음	해외진출 추진기업 등
수수료	무료	무료	유료
분야	초기경영전략 자금조달전략 경영환경분석	경영전략 재무전략	해외진출전략 해외사업타당성
선정방법	영업점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8 리더스론

개요

- 우량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지원

지원대상

- 신용등급 BB+ 이상인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자금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금리우대 : 시설 $\Delta 0.5\%p$, 운영 $\Delta 0.3\%p$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9 KDB Global Star

개요

-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BB- 이상인 거래처(신규거래처 포함)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KDB Global Star로 선정하여 지원

지원대상

-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내용

- 금리우대 : 0.3%p
- 중소기업 전용 우대운영자금의 대출한도 우대
- 신용등급 'A-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외국환 관련 수수료 징수

지원절차

- 영업점 추천 → KDB 성장금융부문에서 선정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 1588-1500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제6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상_ WC300

6-1. 월드챔프	91
-----------------	----

대상_ 중견기업

6-2.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93
--------------------------	----

대상_ 중견·중소기업

6-3.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	94
-------------------------------	----

6-4. 해외전시회	9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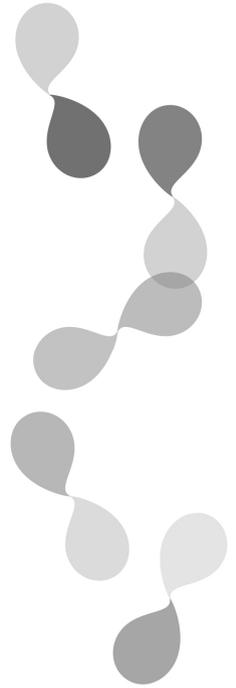
6-5. 해외 IT 지원센터	97
-----------------------	----

6-6. 글로벌 M&A 지원	98
-----------------------	----

6-7. 지식재산권 보호	99
---------------------	----

대상_ 중견·중소기업 우대

6-8. 공동물류 지원	101
--------------------	-----



01 월드챔프

지원개요

-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해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수준의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중소기업청 선정)

선정기준

- 연 매출액 4백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 평균 2% 이상
-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5% 이상 기업

지원내용

-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마케팅 계획 수립
-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시장조사, 영업망 구축, IR 행사, 로드쇼, 전시회 등)
- 신규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KOTRA 이외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수출금융, R&D 등)

지원규모

- 참가기업과 정부의 매칭펀드(50:50)로 총 1억 원의 사업비 조성

지원기간 및 절차

- 1년 단위로 최대 5년 지원



문의처

- KOTRA 글로벌전문기업팀 : 02-3460-7275

2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지원개요

- R&D 기반의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육성 지원

지원대상

- 글로벌기업의 제품 개발 의뢰에 대응 가능한 부품소재 (중간재) 강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 글로벌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정부 R&D 자금지원, 기술 교육 등)
-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월, 서울
 - 글로벌기업 60개사, 한국기업 300개사 참가

지원절차



문의처

-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 02-3460-7845

3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

지원개요

- '서비스문두스(Service Mundus)'는 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 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해외 진출 지원 등 기업별 조사, 마케팅, 해외 진출 활동을 종합 지원

지원대상

- 스마트 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디자인·방송 및 음악·이러닝·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주요 분야 종건·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본 서비스 : 해외 시장 진출 로드맵,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지원
- 선택 서비스 : 해외 진출 지원, 지적권 보호, 기업 역량 구축 사업, 글로벌 기업과 제휴 지원 등

지원절차

- 서비스문두스 홈페이지(www.servicemundus.or.kr) 참고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 : 02-3460-7424

4 해외전시회

지원개요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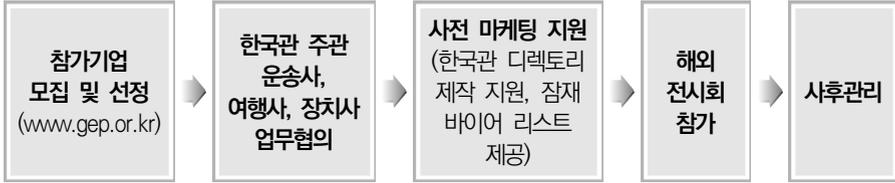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지원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 상한 범위 내 지원
-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측 디렉토리 신청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지원절차

- 글로벌 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 참고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7675, 7256

5 해외 IT 지원센터

지원개요

- 국내 ICT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 콘밸리, 베이징, 도쿄)에 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입주 기업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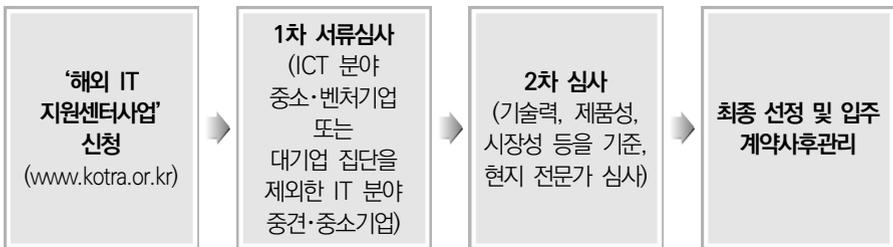
지원대상

- 진출희망지역 ICT 분야 수출 역량 보유 중견·중소 벤처기업

지원내용

- 독자 임차 시보다 저렴한 입주비용으로 거점 및 시설 지원
- 현지 ICT 바이어 발굴 및 소개, 각종 ICT 전문 세미나, 상담회 등에 참가 기회 제공
- 국내·외 ICT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정보 제공 등

지원절차



문의처

- KOTRA IT 사업단 : 02-3460-7626

6 글로벌 M&A 지원

지원개요

- M&A를 활용,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 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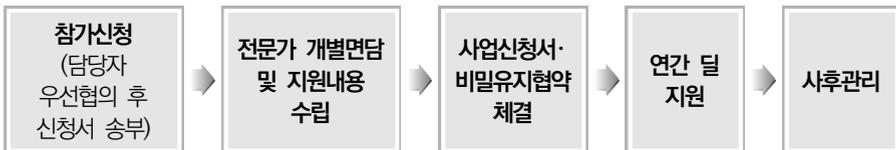
지원대상

- 국내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전략수립 : 센터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 시장파악 :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 딜 소싱 :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타깃 매물 발굴·분석 지원
- 딜 실행 : 타깃기업 Pre-valuation(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용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M&A 진행 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 사후지원 :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절차



문의처

- KOTRA 글로벌 M&A 지원센터 : 02-3497-1110

7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개요

- 5개국 10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를 지원
 - *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내용

- 권리확보 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행정지원)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 지재권 애로 상담 지원 등
- 보호 지원
 -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이동식 IP-DESK,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등

● IP-DESK 비용 지원

구분	지원비율
상표·디자인 출원, 등록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사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건 이내 - 태국 : 500\$/건 이내 - 미국, 독일 :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이내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1사당 1건) - 3,000\$(행정단속 시 5,000\$) 이내
세관 지재권 등록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사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건 이내 - 태국 : 500\$/건 이내 - 미국, 독일 : 1,000\$/건 이내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52

8 공동물류 지원

지원개요

-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업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A/S(일부 지역)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견·중소기업 우선

지원내용

- 참가비 1,500,000원(지사화물류패키지 신청 시 30만 원)
- 물류위탁 계약 체결 및 애로사항 해결
- 현지 물류전문업체 소개,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물류 관련 업무 아웃소싱

지원절차



문의처

- KOTRA 수출유망기업팀 : 02-3460-7452, 7367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정책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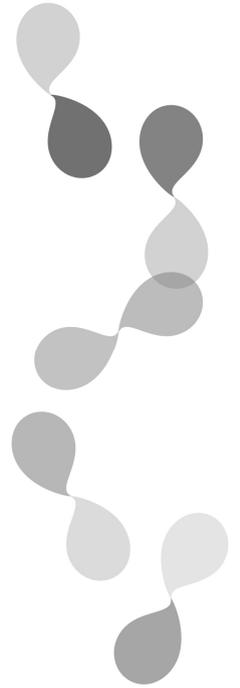
신용보증기금

대상_ WC300

7-1.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105
--------------------------------------	-----

대상_ 중견·중소기업

7-2. 시설자금보증	107
7-3. B2B 플라자	108
7-4. M&A 보증	110
7-5. 유동화회사보증	112
7-6.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115



1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지원개요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미래성장성,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 미래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
- 신용평가등급과 미래성장성·기업가치를 결합한 심사등급 산출로 신용도는 다소 낮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보증한도(기금법 제25조 제2항, 동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 World Class 300으로 선정된 기업이 보증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우대지원

구 분	내 용
30억 원	일반 운영자금
70억 원	구매자금용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무역금융, 수출환어음매입·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
100억 원	시설자금보증
250억 원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 편입)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증료를 차감대상(수출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보증료를 우대지원(최대 0.2%p 차감)
- WC300으로 선정된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을 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신보는 선순위증권에 대해 신용보증 제공)

지원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53-430-4343

2 시설자금보증

지원개요

-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

지원대상

-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 중인 일반기업(주채무계열 제외)

지원내용

- 보증대상채무 : 토지, 건물, 사업용공장, 기계 등의 구입 및 조성에 사용되어지는 시설 자기에 대한 대출금
- 보증한도 : 해당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최고 100억 원)
- 보증비율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조건인 경우 100%까지 가능
- 보증기간 :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 보증료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 : 0.2%p 할인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50% 이상 해지 : 0.1%p 할인

지원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53-430-4343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http://www.kodit.co.kr>

3 B2B 플라자

지원개요

-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서 공동구매 및 고정수발주와 같은 다양한 거래체결 방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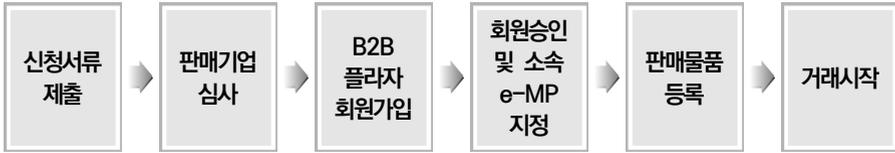
지원대상

- 구매기업 : 중소기업만 가능
- 판매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고정수발주 거래 : 판매기업과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고정 거래처(구매기업) 간의 통상적인 수발주를 지원하는 거래 모델
- 공동구매 거래 : 판매기업이 B2B 플라자에 등록된 물품을 다수의 구매기업들이 공동으로 주문함으로써 좀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모델
- 물류서비스 제공
 - 최고의 물류전문 기업 CJ 대한통운을 통해 최적의 물류비로 화물 운송 서비스 이용 가능
 - B2B 플라자를 통해 거래된 물품의 실제 배송실적을 기반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제공
 -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자동 신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명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 보장

지원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053-430-4373
- B2B 플라자 홈페이지 : www.b2bplaza.net

4 M&A 보증

지원개요

-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대상

- 주도기업 및 대상기업을 중견·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법상 회사 및 개인기업으로 한정
- 주도기업 및 대상기업이 관계기업이거나 보증금지대상 또는 보증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지원을 제한

지원내용

- 보증대상채무 : M&A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 소요자금(피M&A 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M&A 대금과 중개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을 차입하는 데 따른 대출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M&A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
 - 피M&A 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국내기업 간 M&A
 -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 피M&A 기업의 기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영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M&A
-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 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① M&A 소요자금의 50~80%(M&A 기업의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 ② M&A 기업 자기자본의 3배 ③ 인수예정인 피M&A 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우대사항	M&A 보증 금액은 장기, 고액보증의 기준이 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지원절차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지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 053-430-4455

5 유동화회사보증

지원개요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종합신용등급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CPA 감사보고서가 있는 기업	C3 등급 이상	B+ 등급 이상	BB- 등급 이상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	C2 등급 이상	BB 등급 이상	이상

편입한도

-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중견 기업	회사채등급	BBB 이상	BBB-	BB+	BB	BB-	B+	-
	편입한도	250억 원	200억 원	150억 원	100억 원	70억 원	50억 원	-
중소 기업	보증심사 등급	K4 이상	K5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억 원	120억 원	100억 원	70억 원	50억 원	40억 원	30억 원

● 매출액 한도

업종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중소기업 보증심사등급	매출액 한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BB+ 이상	K6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BB 이하	K7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그 밖의 업종	BB+ 이상	K6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BB 이하	K7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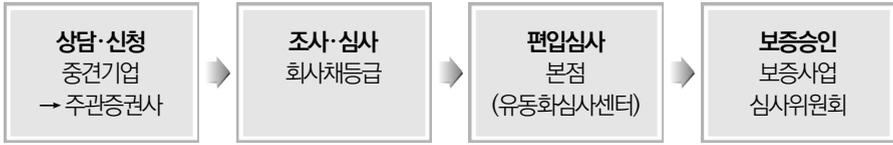
자기자본 한도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7) 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 본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 차입금이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 출액 범위

지원내용

- 중견기업 발행금리 : 신용등급별로 4.37%(A등급 이상)~5.77%(BB-등급) 수준
-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지원금액	최고 70억 원 이내	최고 250억 원 이내
자금출처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보증료	신용등급별 연 0.5~2.5%	없음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자금성격	단기자금(1년 이내) 만기 후 연장 가능	장기자금(3년 이내) 만기 후 차환 가능

지원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 053-430-4452

6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지원개요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지원대상

- 규모제한 없음
 -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BB- 또는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8등급 이상

편입한도

- 기초자산 편입비중

편입기업	기초자산	구성비중
특별차환 기업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의 차환발행 회사채(특별차환 회사채)	30% 이하
건설사	건설업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20% 이하
일반기업	건설업 이외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및 기존 유동화회사보증의 차환 회사채	50% 이상

-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중견기업	등급	A 이상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
	한도	1,500	1,300	1,000	800	600	450	350	200	100	100	100	-
중소기업	등급	K1	K2	K3	K4	K5	K6	K7	K8	K9	K10	K11	K12
	한도	750	650	500	400	300	250	200	100	80	70	60	50

● 매출액 한도

업종	회사채등급	종합신용등급	매출액 한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BB+ 이상	K6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BB 이하	K7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그 밖의 업종	BB+ 이상	K6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BB 이하	K7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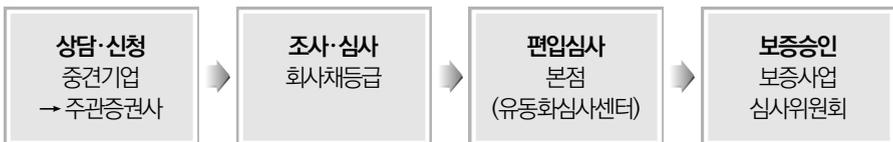
●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자기자본 한도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7) 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의 3배 이내
차입금 한도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 차입금이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 출액 범위

지원내용

- 개별 회사채 금리는 편입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 중견기업 발행금리 : 신용등급별로 4.71%(A등급 이상)~6.11%(BB-등급) 수준

지원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 053-430-4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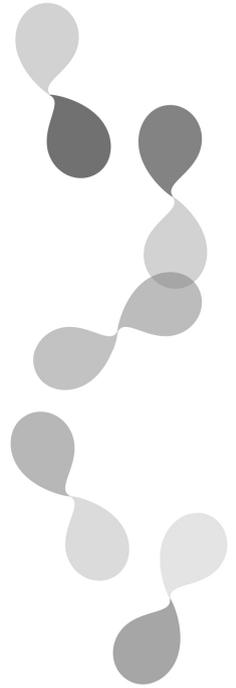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제8장

기업은행

대상_ 중견·중소기업

8-1. 기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119
8-2. IBK창조기업대출	121
8-3.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123
8-4. IBK시설투자대출	124
8-5. 우량산업단지분양특별대출	126
8-6. 우량산업단지설비투자자금대출	128



1 기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지원개요

-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술 또는 제품 보유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상품

지원대상

- 기업은행의 '기술강소기업' 선정기업
- 기술보증기금과 1+1협약보증에 의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기술력평가인증등급 우수기업*'으로서 기업은행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기술보증기금 기술력평가인증등급 BBB 이상 또는 기술평가제공기관 평가 기술신용정보 BBB(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BB+,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의 경우 B+) 이상

대출한도

- '기술강소기업' 및 '기술력평가인증등급 우수기업'
 - 운전자금 15억 원 이내, 시설자금 100억 원 이내
- '1+1협약보증서' 발급기업
 - 신용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지원내용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단기원화대출금리) + 추가금리
 - * 적용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기여도 및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 (시설자금) 최대 15년
 -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보증서 보증기한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I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2 IBK창조기업대출

지원개요

- R&D 과제 성공수행 기업 및 성장·기술 잠재력이 큰 중견·중소기업에게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지원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구 분	내 용
IBK창조기업	· 기업은행이 'IBK창조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중소기업만 해당)
성공기업	· 전문 평가기관*이 추천한 R&D 성공기업 · 보증기관의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일반기업	· 기타 '기술력 인정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합회

** 신보의 가치평가등급 FV 1~2등급(FV 1~9등급 중) 혹은 기보의 기술인증등급 BBB 이상 또는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기술신용정보 BBB(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BB+,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의 경우 B+) 이상인 기업

대출한도

- IBK창조기업 : (운전자금) 동일인당 15억 원, (시설자금) 동일인당 100억 원
- 성공/일반기업 : (운전자금) 동일인당 10억 원, (시설자금) 동일인당 30억 원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80% 이상 보증서 담보 여신의 경우 예외취급 가능

지원내용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 + 추가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5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3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지원개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 이상이고 기업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기업
- '수출강소기업'으로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기업
-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및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대출한도

- 운전자금 : 수출실적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운용
- 시설자금 : 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에 따름

지원내용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단기원화대출금리) + 추가금리
 - * 적용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기여도 및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 (시설자금) 최대 15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I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4 IBK시설투자대출

지원개요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지원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대출대상기업에게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력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 + 추가금리
 - * 적용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기여도 및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장부지 자금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 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사업장매입 자금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 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의 분양자금
경력부동산 자금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건물자금	건물(건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기계자금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수입기계 자금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 방식(D/P, D/A 포함) 또는 송금 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 부처 장관이 수입제한 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사업장임차 자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 용자범위 : 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에 따름
- 대출기간 : 최장 15년(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I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5 우량산업단지분양특별대출

지원개요

- 우량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예정인 기업에 대해 분양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지원대상

- 우량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중 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서 총 분양금액 중 계약금(10%) 이상을 납부하고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상단지명	
시화멀티테크노밸리산업단지	미음지구산업단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생곡산업단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분양 산업단지 (송도에 한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부산강서산업단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대출한도

- 토지분양자금의 80% 범위 내

지원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 + 추가금리
-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3년 이내, 분할상환대출 : 15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I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6 우량산업단지설비투자자금대출

지원개요

- 우량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고, 해당 토지에 사업장 신축 및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지원대상

- 우량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고, 해당 토지에 사업장 신축 및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중견·중소기업

대상단지명	
시화멀티테크노밸리산업단지	미음지구산업단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생곡산업단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분양 산업단지 (송도에 한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부산강서산업단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파주출판도시 2단계
구미국가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수원3일반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광주첨단2임대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대출한도

- 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에 따름

지원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 + 추가금리
-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3년 이내, 분할상환대출 : 15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I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정책

제9장 기타기관

지원기관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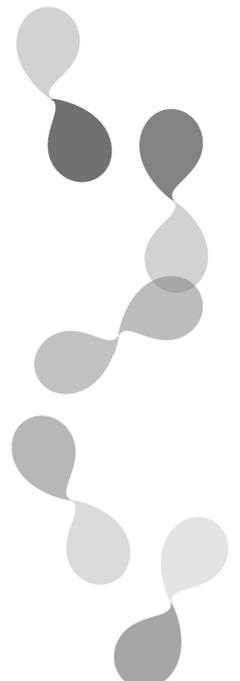
9-1.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133
--------------------------------	-----

지원기관 한국전기연구원

9-2. 인력파견사업	134
9-3.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135
9-4. 이전기술지원사업	136
9-5. 사업화연계지원사업	137

지원기관 에너지관리공단

9-6.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①	138
9-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②	139
9-8.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41
9-9.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142



지원기관 한국기계연구원	
9-10. Techno-Doctor	143
9-11. 기업기술지원	144
9-12. 기술인재지원사업	145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13.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146
9-14.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147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9-15.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지원제도	148
9-16. 전문연구요원 관련 지원제도	150
지원기관 해외건설협회	
9-17. 신시장 개척지원	152
9-18.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153
지원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19. 식품업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수단 발굴 지원사업	154
9-20.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55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2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사업	156
9-2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58
지원기관 한국발명진흥회	
9-2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160
지원기관 외환은행	
9-24.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 지원 제도	161
지원기관 한국화학연구원	
9-25. 기술인재지원사업	162

01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특허청)

개요

-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일부 감면

지원대상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4~6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6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

문의처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patent.go.kr>

2 인력파견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지원개요

- 기술적 애로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이나 신공정 개선 등의 추진이 곤란한 기업에 우리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기술후견인(기술도우미)으로 지정, 파견하여 현장에서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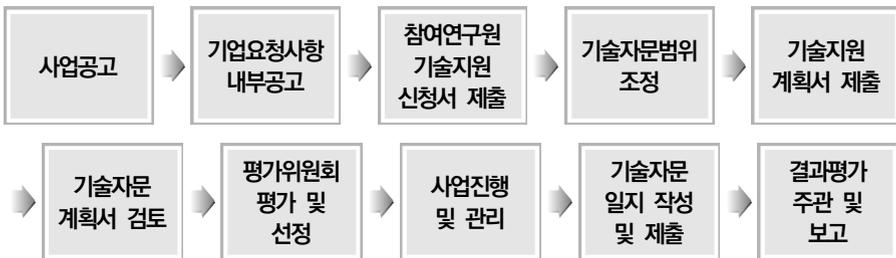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지원(자문) 범위
 - 전기연 연구인력의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 자문방법 : 출장에 의한 현장방문 기술지원 주기적 단기 출장 OR 일정기간 집중적 장기 출장 모두 가능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파견연구원 수의 제한은 없음(한 중소기업에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지원할 수도 있음)

지원절차



문의처

- 성과혁신팀 : 055-280-1182

3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지원개요

- 독자적으로 부품 및 신제품 개발, 신공정 개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기업의 연구인력과 공동으로 기술이나 제품을 직접 개발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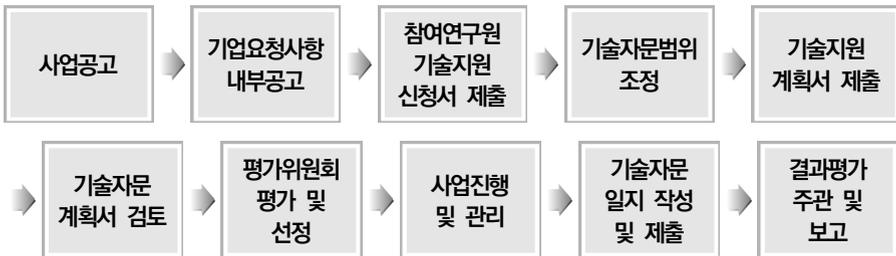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개발지원범위
 - 전기연의 기술개발인력 투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상용화를 위한 애로기술이나 제품 개발
 -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 지원방법
 - 공동연구과제 수행방식에 의한 공정개선,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절차



문의처

- 성과확산팀 : 055-280-1182

4 이전기술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지원개요

- 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특허기술을 기업에 기술이전 후 기술전수 및 사업화 지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이전기술 지원 범위
 -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기술 또는 노하우기술
 -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 지원방법
 - 공동연구과제 수행방식에 의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
 - 과제 협약 후 30일 이내에 기술이전 협약 실시

지원절차



문의처

- 성과확산팀 : 055-280-1182

5 사업화연계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지원개요

- 연구원에서 기술이전한 기술의 조기 사업화 촉진 및 시장 진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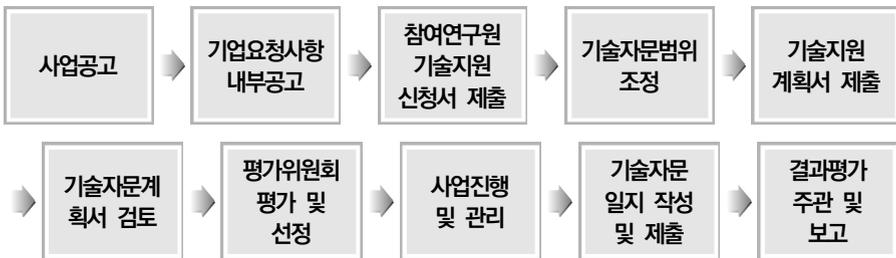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기술 지원 범위
 - 연구원에서 기술이전한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지원
 -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 지원방법
 - 공동연구과제 수행방식에 의한 추가 기술개발 및 기술전수

지원절차



문의처

- 성과확산팀 : 055-280-118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①

6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개요

-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지원내용

사 업 명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300억 원 이내 (동일투자사업장당 150억 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150억 원 이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에너지절약 설치사업	150억 원 이내		
3. 절약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고효율제품등 생산시설설치 사업	10억 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 원 이내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 031-260-4364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②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개요

-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업체 규모별 차등지원
 - 중소기업 총 투자비의 80%, 중견기업 50%, 대기업 10% 이내 지원
- 사업내용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일정

절 차	추진내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 사업장 모집 공고	4~5월
② 선정 및 협약	• 신청 사업장 선정 및 협약 체결	5월
③ 1차 컨설팅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기반 구축 컨설팅 수행	5~6월
④ 컨설팅 결과평가	• 컨설팅 결과 중간 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6월

절 차	추진 내용	일 정
⑤ 계측인프라 구축	•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9월
⑥ 현장확인	•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장확인 및 시설 설치 완료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9월
⑦ 2차 컨설팅	• 에너지절감 활동 수행 및 계측 데이터 기반 성과 파악	9~10월
⑧ 최종평가	• 사업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⑨ 성과보고회	• '15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지원금 정산	12월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 031-260-4214, 4215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8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개요

-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시장다변화 촉진

지원대상

-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해외플랜트 프로젝트 관련기업 등)

지원내용

- 해외플랜트 사업으로서 수익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사업
- 신항구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산업개발계획 프로젝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지원비율 및 규모

- 지원비율 : 50~60% 이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60% 이내
 - 대기업 : 50% 이내(동반성장, 신흥시장 또는 전략플랜트 프로젝트에 한함)
 - 프로젝트당 2억 원 이내
- 지원규모 : 32.36억 원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FS사업팀 : 02-3452-7972, 02-3452-7973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9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개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조사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종합 지원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지원비율 및 규모

- 소요사업비의 50~75% 이내
 - 중소기업(75% 이내), 중견기업(50% 이내)
 - * 기업당 2건, 건당 1억 원 이내
 - * '15년 연내 인증 취득
 -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 후 지급
- 지원규모 : 5.8억 원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031-260-4657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10 Techno-Doctor (한국기계연구원)

지원개요

- 기술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연구원을 Techno-Doctor로 지정하여 기업기술지원, 기술교류의 활성화, 고가실험장비의 공동활용, 시험검사 지원, 기술이전 등 한국기계연구원과 기업 간의 기술 창구 역할을 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기술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당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 주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지원
- 애로기술 해결에 복수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원을 기업에 소개
- KIMM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의 활용방법 소개
- KIMM이 보유하지 않은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자 또는 기관과 연계

문의처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 <http://etsc.kimm.re.kr>

11 기업기술지원 (한국기계연구원)

지원개요

- 기계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연구원이 지원

지원대상

- 기술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애로기술 파악
 - Home-page 등을 통한 On-line 접수
 - 기술수요조사 또는 인적 Network 등을 통한 Off-line 접수
- 기술진단/상담
 - 접수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애로기술에 대한 정확한 현장 파악
- 즉시해결기술지원
 - 기술지원기간 2개월 이내의 기술지원을 말하며 기술지원의 비용은 한국기계연구원 자체예산에서 지원
- 단기애로기술지원
 - 기술지원기간 6개월 내외의 기술지원을 말하며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기계연구원 자체예산에서 지원

문의처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 <http://etsc.kimm.re.kr>

12 기술인재지원사업 (한국기계연구원)

지원개요

- 산업파급효과가 큰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출연(연)의 기존연구인력 또는 채용인력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역량을 제고시켜 중견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사업

지원대상

- 부품소재 산업분야 중 대일역조 품목
-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응용 등 녹색기술산업
-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첨단융합산업
⇒ 기술혁신에 능동적이고 성과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석·박사급 연구인력 기업당 1~2명
- 지원기간 : 3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인건비 : 출연(연) 직원과 동일 수준(정부 50%, 기업 50% 부담)
※ 출연(연) 중견급 연구원을 Mentor 지정하여 출연(연)과 연계

문의처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 <http://etsc.kimm.re.kr>

13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개요

-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견·중소기업 육성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신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 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투자유도형/BM 기획형 : 제품화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 기술
 - BI 연계형 : 전 산업 분야(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기술 등)

지원내용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BM 기획형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 또는 사업화 추진 주체인 중견·중소기업이 주관하여 BM 기획 및 사업화 개발 수행
- BI 연계형
 - 창조경제타운, BI 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BI 추천기관이 추천한 우수 BI에 대하여 제품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783, 3796, 3786~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14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개요

-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별로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대상

- 지역의 중견·중소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대기업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시·도별 주력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필수조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약 578억 원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723, 373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15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개요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 인정내용 : 대기업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중견기업 구간 설정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연구소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주요 지원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40%
 -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공제세액
 -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5%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oita.or.kr>

16 전문연구요원 관련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개요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학사)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지원대상

- 병역 지정업체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견·중소·대기업
 - 대·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 가능
 - 보충역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 가능

지원절차

1. 지정업체 신청원서 제출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1월) / 하반기(6월)
 - 상반기에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2. 선정 추천
 - 추천기간 : 매년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3. 선정 및 인원배정

- 병무청장은 추천기관(미래창조과학부)장의 추천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상위등급)에 대해서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
 - 상반기 접수 : 4월 선정 / 하반기 접수 : 10월 선정

4. 결과 통보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 선정 여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함

5.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구소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여 편입승인을 받음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oita.or.kr>

17 신시장 개척지원 (해외건설협회)

지원개요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 확대 실현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 지원자격
 - 지원가능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직전연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60% 이상(예외 인정은 별도 문의)
 -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견·중소기업 공동신청 시 가능(단독지원 불가)

지원내용 (단위 사업별 또는 포괄 지원)

-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 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중정협력국 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지원금액 및 비율

-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지원한도 2억 원 이내(단, 타당성조사는 3억 원 이내)
-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단, 중견·중소기업과 공동 신청 시에 한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 02-3406-1026, 1066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18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해외건설협회)

지원개요

- 중견·중소건설 업체의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취업 지원과 더불어 중견·중소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선정기업
 -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설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기업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된 기업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내용

-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 파견비용 : 180만 원 한도 내/인(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파견 관련 보험료(여행자 보험 등)
- 훈련비용 : 80만 원/인, 월
-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 02-3406-1027, 1105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19 식품업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수단 발굴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개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감축 수단 발굴 컨설팅을 제공하여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대응역량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총 8개사 (2015년도)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전액 지원, 대기업은 70% 지원(30% 자부담, 2,700,000원)

지원내용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수단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 관리업체(사업장)가 원하는 에너지효율향상 기술(활동) 또는 설비를 중점 진단
- 발굴된 감축수단 적용 우선순위(타당성) 도출 및 감축예상량 산정
 - 발굴된 감축수단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예상량, 에너지비용절감액, 시설투자예상액 등의 산정 및 도출
- 온실가스·에너지 발굴 감축수단 적용을 위한 지원
 - 각종 지원제도 및 설비투자 지원 가이드 제공, 컨설팅 결과 보고서 통보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31-8012-7306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 <http://www.fact.or.kr>

20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개요

-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이전을 받은 농식품산업체가 개발한 시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필요한 양산화공정개발 소요비용 지원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 받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 기술육성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체

지원내용

- 총 사업비 : 1,500백만 원(정부출연금)
-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7억 원(정부출연금 70%, 투자기업 30%)
- 농식품산업체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물 20%, 현금 5%)
 - ※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통보일로부터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차등 납부

기술료 결정기준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31-8012-7266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 <http://www.efact.or.kr>

2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내용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 시 부담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53-718-847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 www.keit.re.kr

2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개요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견·중소·대기업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벤처형전문소재) 중견·중소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핵심소재원천 해당)	혁신제품형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해당)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 시 부담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53-718-8341~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 www.keit.re.kr

2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한국발명진흥회)

지원개요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특허청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원절차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24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 지원 제도 (외환은행)

지원개요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특별출연 및 협약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에 대하여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상품

지원대상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를 신규(증액 포함)로 발급받아 당행과 거래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대상보증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 지원규모
 - 기업별 20백만 원 이내에서 보증(보험)료의 70%를 1년간 지원
- 취급기한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D/P, D/A, O/A 거래 또는 대외지급보증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의 추천에 의해 이용 가능

문의처

- 외환은행 기업사업부 : 02-729-0916

25 기술인재지원사업 (한국화학연구원)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구원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 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도모

지원대상

- 지원분야 : 부품, 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녹색기술 분야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1명의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이하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인력 : 석,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 지원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지원인력 급여의 50% 정부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1명 지원

문의처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042-860-7117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2015년 7월

발행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 소 121-7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도화동, 도원빌딩)

대표전화 02-3275-2985

팩 스 02-3275-2989

이메일 ahpek@ahpek.or.kr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www.ahpek.or.kr/>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